

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준수사항

근거 :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폐기물관리법

근거법령	준수사항	비고
<p>건폐법 제17조 제1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시기 :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(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) ○ 변경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고한 총배출량이 50% 이상 증가하는 경우 2.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 3. 처리업체·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.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.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	<p>신고 미필 과태료 1천만원 이하</p> <p>변경신고 미필 과태료 300만원 이하</p>
<p>건폐법 제34조제1항, 시행규칙 제27조제3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-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: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 -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	<p>과태료 100만원 이하</p>
<p>폐관법 제18조제3항, 별표6 환경부고시 제2008-121호, 건폐법 제18조, 제19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기물전자인계서 의무사용 ○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(제18조제1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년간 보관 ○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작성·보관(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년간 보관 	<p>과태료 100만원 이하</p>
<p>건폐법 제16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중간처리 한자 	<p>과태료 1천만원 이하</p>
<p>건폐법 제13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콘크리트, 페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, 소각가능성 구분하여 수집·운반·보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관기준일 : 보관일로부터 90일 -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설치 ○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○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 	<p>과태료 1천만원 이하</p>
<p>기타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타 환경관계 법규 준수 여부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 -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(오일 등) 처리 및 보관 	

※ 문의처

서구청 자원순환과 560-4400(www.seo.incheon.kr),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(www.me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